

제41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16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 추천의 건
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24162)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5)
6.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6)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2)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2)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4)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2)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9)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2)
1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2)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6)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7)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5)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9)
18.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8)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1)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5)

21.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9)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3)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1)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8)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2)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90)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745)
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6)
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4)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5)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5)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5)
34.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9)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9)
36.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3)
3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8)
3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3)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2)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93)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8)
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4)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3)
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35)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9)
4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
4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4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2)
5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4)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6)
5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2)
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6)
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3)
5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9)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7)

5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5)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8)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8)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2)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2)
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9)
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4)
64.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3)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6)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1)
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5)
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1)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8)
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3)
7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5)
7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7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0)
7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4)

상정된 안건

1. 위원 추천의 건 5
 - 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 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24162) 6
- 의사일정 상정의 건 9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5) 9
6.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6) 9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2) 9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2) 9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4) 9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2) 9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9)	9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2)	9
1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2)	9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6)	9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7)	9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5)	9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9)	9
18.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8)	9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1)	10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5)	10
21.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9)	10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3)	10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1)	10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8)	10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2)	10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90)	10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745)	10
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6)	10
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	10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4)	10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5)	10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5)	10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5)	10
34.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9)	10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9)	10
36.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3)	10
3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8)	10
3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3)	10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2)	10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93)	10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8)	10
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4)	10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3)	10
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10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35)	10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9)	10
4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	10
4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10

4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2)	10
5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4)	10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6)	10
5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2)	10
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6)	10
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3)	11
5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9)	11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7)	11
5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5)	11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8) ..	11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8) ..	11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2)	11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2) ..	11
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9) ..	11
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4) ..	11
64.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3)	11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6) ..	11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1) ..	11
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5)	11
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1) ..	11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8) ..	11
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3) ..	11
7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5)	11
7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11
7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0)	11
7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4)	11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이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등 총 8인의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4일, 15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양일간 걸쳐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 그리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 추천의 건

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이재정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명,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4인,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2인 등 총 8인의

위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8인의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이재정** 상정하고 난 뒤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안건 상정 이후에 관련 안건과 관련된 의사……

○**김용민 위원** 안전 관련은 아니고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정** 예.

○**김용민 위원** 방문규 장관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하셨고 양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데 장관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시더라도 일정 조율하고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재정** 예,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 위원**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방문규 장관의 해외출장을 허락한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쪽 위원들한테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합의를 이뤄 가지고 한 거고, 저는 김한정 간사랑 합의할 때는 민주당 위원들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계속 협의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반박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재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재정** 저도 간사도 거치고 이제 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통상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특히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일정을 가지고 왔을 때 국가가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일정이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일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일정이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정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없는 점은 본 위원장도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향후에도 국무위원들 일정을, 공사가 다망하시고 또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출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와 더욱더 협의해주시고, 국회에서도 스스로 반성할 점은 충분히 있는 게 여러 회의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임의적으로 즉시에 국무위원께 통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마는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서만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무위원도 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국회도 충분히 소통 가능한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충분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의안번호 2124162)

(10시59분)

○**위원장 이재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마

는 심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정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결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한 소위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아쉽게도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의결이 이루어진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조합 출자에 86억원을 증액하였고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을 위하여 IP활용 창업·성장 지원에 32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데 총 223개 심사대상 사업 중 205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논의를 통해 위원 간 이견이 조정되었으나 에너지 바우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총 84개 심사대상 사업 중 78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끝내 위원 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특허청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두 분 차관님 그리고 예결소위의 위원님들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어제라는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전체상임위가 개최된 이 시간까지는 조율에 실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후 진행되는 국회의 예결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금은 더 논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특히 예결소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거나 또는 양당 간사님,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간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간사 간 협의를 하신다든지 그것은 양 간사 그리고 또 간사대행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원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합의되지 않은 안을 일방 처리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이어 가 주시고 정말 국민께서 긴요하게 기다리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의 지점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 주셨으면 합니다.

○노용호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노용호 위원님.

○노용호 위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어제 늦게까지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합의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소위를 해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현장을 보신 분들이면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 봐야 매일 보는 위원들 간에 또 얼굴 붉히게 되고, 저는 이것은 소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결소위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토론도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재정 예산에 대해서인가요?

○양의원영 위원 예.

○위원장 이재정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성원 간사님.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김성원 위원 잠깐만요, 정청래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얻었으니까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를 더 거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국민의힘 간사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라는 곳은 끝까지 논의를 해 봐야지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산 심사에 있어서 전혀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밖에 안 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해주시면 저는 동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위원장 입장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은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자체가.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중대사를 놓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장이나 위원장한테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안건이든 예산이든 법안이든 소위원회-상임위원회-법사위-본회의 이렇게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특위를 또 거쳐야 되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간 예산안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증액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리적 프로세스를 거치는 이유는 예결특위에서 ‘산자위에서 올라온 합의된 예산안은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든 법안이든 어쨌든 정부여당이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고 기다려 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여당 위원들에게 좀 더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자, 좀 더 회의를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없는데 그것을 강행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합리적이다,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여당 위원님 두 분 말씀 들었고 야당 위원님 한 분 의사진행발언 들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이 또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다수결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합의라는 체도를 활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악은 정부의 원안만 상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단독 처리라든지 그밖의 정말 어떤 흉측한 말들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분한 토의와 타협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논의를 거쳤는데 그 각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서 의결을 못 하고 정부안 원안 그대로 올리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본 위원장은 원칙적 입장에서, 정말 의회주의 입장에서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데드라인으로 삼으십시오. 양쪽에서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누가 친부모인지를 입증하는 그 설화처럼 조금씩 양보를 하십시오. 철학을 꺾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꺾으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정부보다는 국회가, 국민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협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월요일 즈음으로 해서 심사를 전체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김성원 위원 의사일정 동의 못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이재정 간사 간…… 잠시만요.

○김성원 위원 의사일정 저희 동의 못 하고요.

○위원장 이재정 발언 기회 드리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간사 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김성원 위원 일어섭시다.

○구자근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님들 입에서 국회법 이야기하고 또 합리적인 이야기하시는 게 참 우습네, 우스워.

(장내 소란)

○노용호 위원 뻔하잖아요, 결과가.

○위원장 이재정 정부 여당에서 조금 더 국회의 권위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양금희 위원 국회의 권위를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다.

○노용호 위원 숙내가 뻔한데 뭐 하러 해요?

○양금희 위원 뭐 하러 그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도 양보가 없는데.

○위원장 이재정 계속 협의를 이어 가 주시고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국회법 이야기 좀 해 주시고 합리적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위원 퇴장)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당 위원님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법률안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55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을 위한 전력망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85)

6.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6)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2)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2)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4)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22)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59)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82)

1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2)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6)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7)

1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5)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69)

18.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12분)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8)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1)
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5)
21.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9)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3)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1)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8)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2)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90)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745)
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6)
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6)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4)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5)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5)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25)
34.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9)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9)
36.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3)
3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08)
3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3)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02)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93)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8)
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4)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3)
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81)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35)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9)
4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1)
4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53)
4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2)
5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44)
5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6)
5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72)
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6)

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3)
5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9)
5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7)
5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5)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8)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8)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2)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2)
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9)
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4)
64.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3)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6)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1)
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5)
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1)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28)
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93)
7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5)

7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7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0)

7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4)

○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4항까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7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5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입니다.

2022년 산업재해 피해자는 13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은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데다 주기적인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법률상 최대 5년간의 고용보험료만 지원할 뿐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안설명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다음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장영진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기술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전기신사업자 및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이 인력, 자본 등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안전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된 3건의 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병합 심사가 필요하고 심사 시 지방의 범위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장섭·김성원·김용민·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정의에 이중국적자를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로의 인수·합병 심사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동 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곤란했던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여 다양화·지능화된 기술 유출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기술보유기업의 해외 모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개정안으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과 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은 잘 썩지 않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대신 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기술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기반이 형성되지 못해 미래 먹거리 산업화 및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 진흥 및 지원 필요성이 있는 바 제정안의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용 범위 규정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우선구매 의무규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김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을 허용하며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 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 신산업인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송전사업자 등이 부담하고 있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비용을 전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한다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전력망을 원활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변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송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 활동이므로 지원 사업을 온전히 공적 영역의 역할로 보아 사업자의 부담을 모두 경감하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6페이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7년 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보다는 법령 등의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지 격차 완화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은 생략하고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과 소규모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은 필요적절한 입법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현행 소상공인법의 취지를 고려한 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요건 미충족의

경우에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우선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의무를 면제할 경우 코로나19 피해 및 고물가 상황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지원금 환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은 생략하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각종 지원 사업, 특례, 규제 개선 등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별화된 법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기업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사후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생산성 관련 정의를 노동생산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법상 합병 절차 및 주식 교환 관련 특례를 준용하도록 할지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

○양향자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정 양향자 위원님.

○양향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정 예.

○양향자 위원 양 정당 간의 상황을 보면서 제

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R&D 사업 감액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부담한 상황인데요. CF100을 하든 RE100을 하든 필요한 건 원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스테이블(stable)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의 이 R&D를 다 없애 버리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야당 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어서 제가 12개, 그러니까 7개 첨단산업 클러스터, 5개 소부장 클러스터 지정해 놓고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요? 오죽했으면 저희 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전 지자체를 만나고 다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안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하시라고 하고 저는 이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양향자 위원님 주신 의견도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 법안 말고 예산 토론을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예산 얘기를 해서……

○위원장 이재정 예산 토론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방식으로 하시되 저희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양이원영 위원 예.

○위원장 이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55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60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 등에 대한 위원

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정일영 위원님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어 가 주시지요.

○양의원영 위원 저는 순서대로 하려고 아까 처음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주시니까, 1분만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하나는 예산 관련한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견에 대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MR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과연 국내에 건설할 데가 있겠냐, 스몰 모듈러 리액터(Small Modular Reactor)기 때문에 규모가 50~70MW, 지금 가스 열병합발전소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몇 개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건설하는 것은 현재 대규모 원전을 원거리 방식으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서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해당 지역구에 유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기에 R&D를 투자하는 것 자체는 세금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처럼 땅이 굉장히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도 사실 이 SMR 문제가 경제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문제로 결국은 취소가 돼 버리는 일이 생겼고요. 관련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국내에서의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S 모 기업 또 S 모 기업, D 모 기업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주가 폭락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실 잘못된 정책, 정부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결국 기업도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세금 낭비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의 반복을, 이번에 외신을 통해서 SMR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R&D를 고수하겠다는, 그것도 800%나 늘려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반영에 꼭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재정 저희가 아까 예산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놓쳤던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1분만 더 드려도 됩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는 이것과 또 하나 연료전지에 대한 겁니다.

연료전지 사업이 사실 원전과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섬처럼 고립돼 있는 전력망에 연료전지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나 2030년대까지 우리는 전부 다 그레이 원전, 온실가스가 더 나오고 비용은 더 들어가는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R&D 넣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적인 연료전지 사업도 지금 폭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모 기업도 수조 원의 손실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저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워킹그룹 회의록이라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회의 자료든 내용이든 보고 자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총괄위원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회의하고 마지막에 할 때 회의하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워킹그룹이 거의 매월마다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년 5월 달에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 워킹그룹 구성원도 원전 쪽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재정 갈무리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의록이 없다고 잡아떼는 것조차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기록물상의 회의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에 보고하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국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과거의 문제로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부처에서는 기록을 생산하십시오, 어떤 회의든 간에. 특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접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기록을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가 두려워서 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워킹그룹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회의에는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국회가 권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의무입니다. 작성해 주시고 그것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면 나름의 체제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국가기록물법도 있고 유사 논리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통하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룰 안에서 부처가 논의를 이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재정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아직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의 핵심 쟁점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해서 감사원 기관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한 3년째 해묵은 과제이고 과기정통부나 국토부의 경우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일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가 완강하게, 마치 본 위원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 결과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상임위도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전체회의가 열릴 때 이 건 합의 처리가 안 되면 결과보고서도 채택 못 하고 계속 떠밀려 갈 수는 없으니까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관련해서 양당 간사님,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 가 주시고 합의해 주실 것을 독촉하고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당 위원님께서 모두 비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마는 위원장에게 향후 표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는 것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 권한 밖입니다. 제 권한 밖의 일이고 그걸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수당이 표결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협상에 있어서는 고려할 요소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을 만든 국민의 맨데이트(mandate),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결을 한다고 하면 흔히 힐난할 수 있는 폭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다수당이라는 것은 타협의 지점, 무게 중심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회법과 그리고 또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본 위원장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위원장님, 법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왜냐하면 제가 법안소위가 아니라서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이재정 저희 이미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아까처럼 논쟁이 계속돼서 제가 부득이 절차를 놓친 게 아닌 이상 위원님이 이것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하정립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박일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원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현우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최용환	법무법인(유) 울촌 변호사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권명호	김경만	김성원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김희재
노용호	박수영	박영순	신영대
양금희	양이원영	양향자	이동주
이용빈	이인선	이장섭	이재정
이철규	정일영	정청래	최형두
한무경	홍정민		

○출장 위원(2인)

김한정 이종배

○청가 위원(1인)

윤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박철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영진
제2차관	강경성
기획조정실장	이원주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무역투자실장	김완기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이민우
지역경제정책관	박종원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이옥현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무역정책관	조익노
원전전략기획관	김규성
무역안보정책관	강감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진종욱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웅
차관	오기태
기획조정실장	변태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이대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원영건
정책기획관	이대찬
중소기업정책관	박종원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
창업정책관	박용순
벤처정책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관	조경원
상생협력정책관	정기환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김봉덕

특허청

청장	이인실
기획조정관	정인식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
특허심사기획국장	김지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구영민